

대표적인 착오신고 사례

- 1년 계속근무자인 경우 퇴직금 정산 등으로 주(현)과 종(전) 분리 신고하여 근무기간과 소득총액을 다른 기준으로 신고
 - 급여총액은 퇴직금 정산 후 지급된 급여총액만 기재하고, 주(현)근무기간은 1년 기간으로 신고
 - ※ 실제소득보다 낮게 결정
 - 급여총액은 1년간 급여총액을 기재하고, 주(현)근무기간은 퇴직금 정산 이후 기간으로만 신고
 - ※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

5 소득총액신고 이후 변경사항

연금보험료가 달라집니다.

- 2010년도 귀속 소득총액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,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7월~2012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.
- 2011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(천원 미만 절사)의 9%가 부과됩니다.

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.

-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매년 7월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.
- 달라지는 예상연금액은 “내연금 알아보기”에서 확인하세요.

내연금 알아보기

- 홈페이지(<http://csa.nps.or.kr>) : ‘내연금 알아보기’ 예상연금액 조회
- 상담전화 : 국번없이 ☎ 1355
- 가까운 지사 방문 : 신분증 지참

6 소득총액신고 Q&A

Q 개정된 국민연금법령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결정은?

■ 국민연금법령 개정 주요 내용

- 사업장의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 164조에 따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하며 공단이 과세자료를 입수·활용하여 정기결정 처리 후 통지합니다. 단, 개인사업장 사용자, 근로소득과세자료 착오자·미보유자 및 과세자료보유자 중 기준소득월액 30% 이상 상·하향 예정대상은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대상입니다.

- 사업장에서는 6월중 정기결정 통지서(공단발송)를 확인하시고, 가입자별 과세자료 연계 기준소득월액 결정 내용과 소득총액신고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공단에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.
- 국민연금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자와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은 2011년 7월에서 2012년 6월까지로 단일화되었고, 법정신고기한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되었습니다.
-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총액을 해당사업장의 총근무일수(근무기간 - 휴직일수)로 나눈 후 30배 한 금액으로 결정되며,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결정됩니다.
 - ※ 근무기간과 휴직일수를 기재하면, 공단에서 근무총일수를 자동 산정

Q 취득·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?

- 2010.12.1 이전 입사자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고서하단 여백에 추가 기재 후「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서」를 함께 제출하고, 신고대상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줄로 삭선 후 여백에 ‘상실’이라 기재 후「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」를 함께 제출

Q 소득총액 미신고시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은?

- 가입자별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에 2010년도 전체 가입자(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전원)의 평균소득월액 변동률(2%)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.

Q 2011년 정기결정에서 제외된 가입자의 보험료는?

- 2010.12.20 이후 취득자(납부제거자)는 소득총액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, 취득(납부제거)시 신고소득에 따른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2012년 6월까지 적용하여 현재와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. (단, 상한액 조정대상은 2011년 7월부터 최고 3,750,000원까지 조정됩니다.)
- ※ 2011.7.1 만60세 도달 상실자 및 2011.1.1 이후 기준소득월액 특례 변경(20%이상 하향자)자는 정기결정에서 제외됩니다.

Q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이 매년 조정되나요?

-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3,750,000원, 하한액 230,000원이며, 매년 기준소득월액은 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. (매년 3월 고시)
- ※ “A값” 최근 3년간 전체가입자의 소득월액의 평균 (물가상승 반영)
- 상·하한액 조정 효과
 - 소득 368만원 초과자 : 보험료 상승, 연금수령액 상승
 - 소득 368만원 미만자 : 보험료 동일, 연금수령액 상승

www.nps.or.kr

2010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

- 소득총액신고란?
- 소득총액신고 업무흐름
- 소득총액 신고 요령
- 신고방법 상세 안내
- 소득총액신고 이후 변경사항
- 소득총액신고 Q&A



NPS 국민연금

국번없이 1355

1. 소득총액신고란?

● 소득총액 신고란? ('09.225 법령개정)

- 공단이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,
- 개인사업장 사용자,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·자료상이자 과세자료 보유자 중 30% 이상 상·하향 대상에 한하여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절차

● 전년도 소득총액

- 2010. 1. 1~ 2010. 12. 31. 기간 중 해당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 (연도 중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)

2. 소득총액신고 업무흐름

● 주요업무 흐름

- 2011. 4월 2010년도 근로소득자료 입수, 과세자료 보유자 결정처리
- 2011. 5월 소득총액 신고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·접수
- 2011. 6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서 발송
- 2011. 7월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고지(2012.6)
- 2011. 10월 공적자료 대비 소득적정신고 여부 확인

3. 소득총액신고 요령

● 신고대상

- 2010. 12. 1.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중인 가입자
- 납부예외중인 자 및 2010. 12. 2이후 납부재개자는 제외

● 신고 사항

- 근무기간 : 2010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근무(사업기간) 기재
- 휴직일수 : 2010년도 중 해당 사업장의 휴직일수 기재
- 소득총액 : 위 근무기간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(소득)

근로자 : 『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(현)근무처의 ⑯번 계 금액 (외국인근로자도 동일하게 신고)

개인사업장사용자 : 『부동산 임대소득·사업소득명세서』상의 소득 (⑩ 번) 금액

- * 근로자 : 근로소득(소득세법 제20조제1항) - 비교세소득 (동법 제12조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)

작성방법예시

* 10.31부터 〇〇상사에 입사, 5.1일부터 5.31까지 휴직, 6.1부터 복직근무

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					
구분	주(현)	종(전)	납세	조합	합계	
⑨ 근무처명	〇〇상사	□□기업				
⑩ 사업자등록번호						
⑪ 근무기간	2010.03.01~2010.12.31					
⑫ 휴직기간						
⑬ 급여	15,000,000	3,000,000			18,000,000	
⑭ 상여	5,000,000	500,000			5,500,000	
⑮ 인정상여						
계	20,000,000	3,500,000			23,500,000	

2010년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						
순번	성명	주민등록번호	취득일	근무기간	휴직일수	소득총액
0001	홍〇〇	123456-1234567	2010.3.1	0301~1231	31	20,000,000

* 개인사업장사용자는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총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

2010년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·사업소득명세서		
① 소득구분코드	30 (부동산임대소득)	40 (사업소득)
③ 사업장소재지	〇〇구〇〇동	〇〇구〇〇동
④ 상 호	〇〇〇-〇〇	〇〇〇-〇〇
⑤ 사업자등록번호	〇〇〇-〇〇-〇〇〇〇〇〇	〇〇〇-〇〇-〇〇〇〇〇〇
⑥ 총수입금액	20,000,000	30,000,000
⑦ 필요경비	5,000,000	10,000,000
⑩ 사업소득금액(⑥-⑦)	15,000,000	20,000,000

* 동일사업장에서 복수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·사업소득은 소득총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.

근무기간 기재 사례

- 동일 사업장에 2010.11.~3.25. 및 2010.8.1~12.31. 근무 → 8. 1 ~ 12. 31
- 실제 근무기간 2010.11.~12.31.이나 2010.7.1.국민연금 가입 → 1.1~12.31
- 분리적용 관계에 있는 A사업장에 2010.1.1~4.30. 근무, B사업장에 5.1~12.31. 근무 → 1.1~12.31 (분리적용 사업장기간 전입·전출시 합산하여 기재)

● 신고기한 2011년 5월 31일 (화) 까지

● 신고방법

-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10년도 신고 사항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직접 우편 또는 FAX로 제출
- EDI 서비스를 통하여 제출
-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(www.4insure.or.kr)를 통하여 제출 가능

●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

- 2010.12.1이전 취득자 : 2010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2011년 7월~2012년 6월까지 적용
- 2010.12.2이후 취득(납부재개)자 : 취득(납부재개)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2012년 6월까지 적용 (상한액 조정자는 예외)

●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총액 적정신고 여부 확인

- 2011년10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공적 소득자료와 대사하여 기준소득월액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나,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년 7월로 소급 적용됩니다.

4. 소득총액신고대상 유형별 상세안내

● 소득총액신고대상자 유형별 신고

- 소득총액신고서의 신고유형란에 발체사유를 유형으로 표기

유형	소득총액 신고대상 포함사유
1 유형	개인사업장사용자
2 유형	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(법인/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자)
3 유형	종전소득 대비 30%이상 상향자 (단, 취득일과 과세시작일 상이자에 한함)
4 유형	종전소득 대비 30%이상 하향자

● 3유형 및 4유형 소득총액신고 대상으로 발체 사유

사업장의 연말정산시 근무기간,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착오 결정될 개연성이 높아 이런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하여 신고대상으로 발체

대표적인 착오신고 사례

- '10.7.1 연도중 중간입사자의 근무기간을 2010.1.1~12.31 신고
 - 총급여 10,000,000 원이며, 총근무일수 184일인 근로자
 - ※ 실제 기준소득월액 : 1,630,000 원 (10,000,000 ÷ 184일 × 30)
 - ※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821,000 원 (10,000,000 ÷ 365일 × 30)
- '10년 12월급여를 '11년 1월지급 후 급여총액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
 - 소득세법시행령제49조: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
 - '10.11.1 입사한 근로자의 11월 급여(100만원, 2010년 12월 지급), 12월 급여(100만원, 2011년 1월 지급)
 - ※ 실제 기준소득월액 : 983,000 원 (2,000,000원 ÷ 61일 × 30)
 - ※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: 491,000 원 (1,000,000원 ÷ 61일 × 30)
- 휴직기간 미반영 - 휴직을 하였으나,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
 -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실제소득보다 낮게 결정